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7
----------	-----

2023. 4. 28.(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진희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3년 4월 10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4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 · 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는 통학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도지사의 통학로 지정 요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및 주정차금지 요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김홍식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 일정한 장소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임.
- 도 내 5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충북도는 따로 조례를 두고 있지 않아 도 차원의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는 통학로에 관하여 규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참 고

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정일	13.10.4	08.11.5	17.10.30	10.2.22	12.5.15	11.12.30	13.6.28	14.12.22
시·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정일	12.11.6	19.3.8	16.4.11	13.8.9	20.3.16	12.4.9	21.7.8	10.6.29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4조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개선방향 및 현황,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노상주차장의 폐쇄 또는 이전 계획, 차량진입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는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는 도지사가 충청북도경찰청장·경찰서장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9조는 도자사가 시장·군수에 대하여 주정차금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신호기·안전표지·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는 도지사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그 밖의 조문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3. 4. 12.~4. 18.)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통학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지정 및 주정차금지를 위한 신호기·안전표지·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차량통제에 관한 권한은 충청북도경찰청장·경찰서장에게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도지사의 적극적인 요청 및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4. 검토의견

○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통학로에 대한 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린이 통학로 지정 요청·차량통제 요청·주정차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례제정의 필요성,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이 인정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제정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하여 시장·군수, 충청북도경찰청장·경찰서장에게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적극적인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통학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4. “어린이 통학로”란 제2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시장·군수가 어린이 보행안전에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어린이 통학로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5. 어린이 통학로 내 노상주차장의 폐쇄 또는 이전 계획
6. 어린이 통학로 내 차량진입 제한
7.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 지원
8.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9.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과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 내 교

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 등 어린이 통학로 개선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시장·군수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요청) 도지사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로에 대하여 시장·군수에게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요청)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금지 요청)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관한 안내와 단속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제10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초등학교등의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교육
2.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서 제작하여 교육하는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통학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시설 설치·개선 및 정비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9조, 제10조, 제11조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 결과

-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총 22,675백만원 소요

나. 재원조달방안(1년간 4,535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도비 1,952백만원, 시군비 1,952백만원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 도비 299백만원, 시군비 299백만원
- 교육 강사수당 등 : 도비 33백만원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4,535	4,535	4,535	4,535	4,535	22,675
사업명	재원	3,904	3,904	3,904	3,904	3,904	19,52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도비	1,952	1,952	1,952	1,952	1,952	9,760
	시군비	1,952	1,952	1,952	1,952	1,952	9,760
사업명	재원	598	598	598	598	598	2,990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국비						
	도비	299	299	299	299	299	1,495
	시군비	299	299	299	299	299	1,495
사업명	재원	33	33	33	33	33	165
교육 강사수당 등	국비						
	도비	33	33	33	33	33	165
	시군비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